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등〉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41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등	2
※ 참고자료	9
1.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9
2. 은행 여·수신금리 공시 관련 규정	10
3.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 비교 공시 예시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2. 1. 28.
3. 회 부 일 : 2022.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함.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은행의 예대금리차 정기 공시 등

□ 개정안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금리”라 한다)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u>

□ 먼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살펴보면, 예금금리의 경우 다수의 시중은행이 “기본금리+우대금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예금금리의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은행채 금리 등)에 제반비용을 감하고 조정항목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우대금리는 각 은행의 결정에 따른 우대금리와 급여 이체 등 부수거래 충족 우대금리로 구성됨.

【표1】은행의 예금금리 구성

- | |
|---|
| ① 기본금리 : 시장금리(은행채) - 제비용(예보료+지준율+업무원가) ± 조정항목 |
| ② 우대금리 : 본점부서 결정 우대금리 + 부수거래 충족 우대금리 |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금리 모범규준」(은행연합회)에 따라 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기준금리에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및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본부 조정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음.¹⁾²⁾

【표2】은행의 대출금리 구성

① 기준 금리	②가산금리							③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포모임	유동성 포모임	신용 포모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예보료,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 률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 영 업점 조정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9.1.22.)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9.1.22.

2)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참조

□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는 최근 한국은행이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21.8월 0.5→0.75%, '21.11월 0.75→1.0%, '22.1월 1.0→1.25%, '22.4월 1.25→1.5%)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의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20.3월 1.25→0.75%, '20.5월 0.75→0.5%), 최근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지속·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음.³⁾

□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두 금리간의 차(이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2022년 3월의 은행 가중평균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76%p, 잔액 기준 2.32%p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2020년 12월과 비교할 경우에도 예대금리차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한국은행 보도자료, “통화정책방향”

【표3】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단위: %, %p)

		2020.12	2021.8	2021.10	2021.12	2022.1	2022.3 ^p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A)	0.90	1.03	1.29	1.70	1.65	1.74
	- 순수저축성예금	0.90	1.00	1.28	1.67	1.64	1.71
	- 시장형금융상품	0.95	1.15	1.34	1.82	1.68	1.90
	대출금리(B)	2.74	2.87	3.07	3.25	3.45	3.50
	- 기업대출	2.73	2.78	2.94	3.14	3.30	3.39
	· 대기업대출	2.51	2.56	2.67	2.86	3.03	3.12
	· 중소기업대출	2.89	2.93	3.14	3.37	3.52	3.57
	- 가계대출	2.79	3.10	3.46	3.66	3.91	3.98
	· 주택담보대출	2.59	2.88	3.26	3.63	3.85	3.84
	금리차(B-A)	1.84	1.84	1.78	1.55	1.80	1.76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C)	0.75	0.67	0.73	0.83	0.88	0.96
	총대출금리(D)	2.80	2.79	2.89	3.04	3.12	3.28
	금리차(D-C)	2.05	2.12	2.16	2.21	2.24	2.32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2021년 시중은행의 총수익은 53조원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이자수익이 약 4.8조원 증가(41.2 → 46조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⁴⁾

4) 다만, 최근 한 연구에서는 수년간의 은행 수익이 매우 높았던 것은 은행의 약탈적인 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대출자산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음.(자료: 이대기·김우진·구본성,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2.3.)

【표4】 시중은행의 총수익,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총수익	46.0	47.3	48.5	53.0
이자수익 (비중)	40.5 (88.0)	40.7 (86.0)	41.2 (84.9)	46.0 (86.8)
당기순이익	15.6	13.9	12.1	16.9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예대금리 산정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결정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예금·대출 등 금리는 은행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제52조의2과 하위 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 등을 공시하고 있고,⁵⁾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을 통해서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⁶⁾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예대금리 공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안 제30조제4항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성·합리성 검토와 개선 권고의 경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⁷⁾

○ 이는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게 되면 대출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은행의 리스크 회피 태도로 인해 기존 대출자에 대한 대출불가나 대출한도의 축소, 고신용 대출수요자에 대한 유치경쟁 심화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출수요자간

5)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은행의 여·수신금리 공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2】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6)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을 통해 각 은행별 예금금리, 적금금리, 가계대출금리, 중소기업대출금리 등 금리를 기간·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하고 있음. 【참고자료3】

7)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⁸⁾

- 은행연합회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은행 간 경쟁과 수요·공급을 통해 결정되는바,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은행이 금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경우 은행 간 담합으로 규제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법제적인 측면에서 법 제30조는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바, 은행의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 등의 공시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의2 다음에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⁹⁾

8) 김은갑, “예대금리차, 가산금리 관련 공약에 대한 생각”, IBK투자증권, 2022.3.17.

9) 「은행법」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11

【참고자료1】 시중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 현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권 대출금리는 ①대출 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 ③가감조정금리로 구성

① 기준 금리	②가산금리							③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예보료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률	부수 거래 감면 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 ① (대출 기준금리) 대출상품에 따라 시장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수신금리 등을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

* 은행채 발행 금리 상승, 예금 금리 상승 등의 경우 대출 기준금리 상승

- ② (가산금리)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을 반영해 산정

* 목표이익률을 제외한 가산항목은 은행 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사실상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항목은 목표이익률임

- ③ (가감조정금리) 급여이체,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의 구성항목 세부내용>

신용프리미엄	차주 신용등급, 담보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	
리스크프리미엄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 간 차이	
유동성프리미엄	기준금리 변동주기보다 대출 계약만기가 장기인 변동금리대출에 적용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자본비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업무원가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을 원가배분 방식을 적용해 산정	
법적비용	신보 등 출연료,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 등	
목표이익률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본부·영업점장 조정금리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자료2】 은행 여·수신금리 공시 관련 규정

1. 「은행법」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5(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3.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3]

은행 경영공시 항목 및 내용

1. 국내은행

항 목		공시주기	내 용
[경 영 실 적]			
13	개요 가. 수익성	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충당금적립전이익) 내용 및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요인과 이익률, 원화예대금리차, 명목순 이자마진 현황 및 전년도 대비 주요변동내용
[기 타 현 황]			
35	여·수신 금리 결정체 계 및 금리현황	분기	여·수신 금리 결정체계, 금리현황

대출가산금리 공시항목 및 내용

항 목		공시주기	내 용
1. 가계대출금리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조정 금리, CB사 개인신용평점,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금리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 조정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참고자료3】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 비교 공시 예시

정기예금

상호부금

개인MMDA

법인MMDA

☒ 전체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광주은행
☒ 토스뱅크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제주은행
 ☒ 신한은행
☒ 한국씨티은행
☒ 전북은행
 ☒ 우리은행
☒ SH수협은행
☒ BNK경남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DGB대구은행
☒ 케이뱅크
 ☒ 하나은행
☒ BNK부산은행
☒ 카카오뱅크

• 이자 계산방식 ☐ 단리 ☒ 복리

• 가입방식 ☒ 전체 ☐ 영업점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 전화 ☐ 기타

• 정렬방식 12개월 오름차순으로 정렬

검색

검색결과 공시정보(재무상황, 리스크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엑셀 출력하기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복리이자 %)				최고우대금리(복리이자 %)				상세 정보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KB국민은행	KB국민첫채테크예금	1.30	1.40			1.50	1.60			보기
KB국민은행	KB Young Youth 증여예금		1.45				1.55			보기
KB국민은행	KB골드라이프연금우대예금		1.45				1.65			보기
광주은행	미즈쉴복리정기예금	2.13	2.59	3.03		2.33	2.79	3.23		보기

은행별 비교공시 (2021년 2월 부터) 은행별 비교공시 (2019.7월 ~ 2021.1월) 은행별 비교공시 (2015.9월 ~ 2019.6월) 은행별 비교공시 (2015년 8월 이전)

☒ 전체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광주은행
☒ 토스뱅크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제주은행
 ☒ 신한은행
☒ 한국씨티은행
☒ 전북은행
 ☒ 우리은행
☒ SH수협은행
☒ BNK경남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DGB대구은행
☒ 케이뱅크
 ☒ 하나은행
☒ BNK부산은행
☒ 카카오뱅크

• 공시년월 2022년 02월

• 대출종류 ☐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 일반신용대출 ☐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 상세구분 ☒ 대출금리 ☐ 대출금리 상세보기(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

검색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단위 : %)

공시정보(재무상황, 리스크정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엑셀 출력하기

은행	구분	신용등급별 금리(%)							참고사항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평균금리	서민금융 제외 평균금리	
BNK경남은행	대출금리	3.52	5.02	5.83	7.38	11.17	4.13	4.00	
BNK부산은행	대출금리	3.98	4.97	6.25	5.92	8.65	4.79	4.78	
DGB대구은행	대출금리	4.15	4.79	5.56	6.19	8.27	5.49	5.20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4.02	4.67	6.08	7.51	9.50	4.16	4.01	
KB국민은행	대출금리	3.69	5.26	8.20	10.17	10.50	4.57	3.89	
KDB산업은행	대출금리	-	-	-	-	-	-	-	
NH농협은행	대출금리	3.74	4.84	6.72	6.66	13.00	4.23	3.96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